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업무 관장 및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업무는 보건소장이 관장하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부 및 주민등록상 영아를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한다.

다.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조, 제8조 및 제10조

나. 예산관련사항 : 예산부서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관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출산 장려 지원”이라 함은 관내에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에 출산 단계별로 지원되는 일정금액의 현금과 물품을 말한다. 여기서 전 가족이라 함은 출생아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이 관장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단계별 출산장려금 지원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부 및 주민등록상 영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미혼부,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및 위와 같은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입양아도 포함됨)
2. 부 또는 모가 직장, 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위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한다.

② 자녀수에 관계없이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5만원 이하의 출산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 제1항 단계별 출산장려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첫째 아기 출산장려지원금 : 10만원
2. 둘째 아기 출산장려지원금 : 20만원
3. 셋째 아기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 100만원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출산장려지원금의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②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③ 신청인이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읍·면장은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후 출생신고서와 동일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④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2. 지원대상 제4조제3항의 경우
가.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호(제)적등본(본적이 타시군인 경우에 한한다.)
나. 직업상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다. 사실 거주인의 경우 주소지 이장 확인서 첨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예금통장 사본1부
⑤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군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기타 지원대상 여부
⑥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⑦ 각 보건지소장은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보건(지)소 임부등록여부
2. 기타 지원대상 여부
⑧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

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⑨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14일 이내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및 중단 등)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지원금을 받은 허위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모·부자복지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금 수혜 대상자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한다.

제9조 (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출산장려지원금 신청서를 비치·배부하며, 보건소장은 저출산대책 단계별축하금 접수대장 및 지급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출산장려지원금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출 생
영 아</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출생 장소</td><td colspan="3"></td><td>출생일자</td><td></td></tr>
<tr><td>부모의 자녀수</td><td colspan="3">자녀 중 번째</td><td colspan="2">단태아.쌍태아.삼태아</td></tr>
<tr><td>부</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모</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td><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부모이외의 보호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d>출생아와의 관 계</td><td></td></tr>
<tr><td>보호사유</td><td colspan="5"></td></tr>
<tr><td>연락처</td><td>자 택</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입금계좌</td><td>은행명</td><td></td><td>계좌번호</td><td></td><td>예금주</td><td></td></tr>
<tr><td colspan="2">관내 실 거주 여부</td><td colspan="2">여 / 부</td><td>보건지소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읍.면장 (직인)

년 월 일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1부)
※보건(지)소 임부등록 및 영유아등록 여부확인
※단계별차등지원(첫째아: 일십만원. 둘째아: 이십만원
(셋째아이상: 일백만원)

성주군수 귀하</td></tr>
<tr><td>보건소장
검토의견</td><td colspan="6"></td></tr>
</table>

〔별지 2〕

단계별 출산장려지원금 접수대장

결 재			일련번호	신 청 년월일	영유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세대주 <예금주>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담당자	담당	소장								

[별지 3]

단계별 출산장려지원금 지급대장

결 재			일련번호	신청월일	지급월일	지급금액(단위:원)	영유아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예금주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담당자	담당	소장										